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5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4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“이의신청”을 “이의제기”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“이의신청”을 “이의제기”로 함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 중 “이의신청”을 “이의제기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3조(과태료의 부과 등)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8과 같으며, <u>부과·징수 절</u> <u>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</u> <u>법」에 따른다.</u></p>	<p>제13조(과태료의 부과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과·징수 및 이</u> <u>의신청</u> ----- -----.</p>	<p>제13조(과태료의 부과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과·징수 및 이</u> <u>의제기</u>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부과·징수”를 “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